

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1/11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Golpanol® MBS Granules N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chemical for industrial metal-working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한국바스프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14-16층

전화번호: +82 2 3707-3100 / -7500

팩스번호: +82 2 3707-3122

이메일 주소: Basis.kr@basf.com

비상시 연락처:

전화번호: +82 2 3707-7770

2. 유해성 · 위험성

유해 · 위험성 분류:

심한 눈 손상/눈 자극: 구분 2A

피부 과민성: 구분 1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 문구: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십시오. 취급 후에는 다량의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으십시오.

예방조치문구 (대응):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어내십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십시오.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십시오.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구하십시오.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탁하십시오. (해독제의 즉각적인 복용이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요령을 참고하여) 정해진처치를 하십시오(경고표지의 처치 내용을 참조).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십시오.

예방조치문구 (폐기):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본 제품은 특정 조건 하에서 분진 폭발 가능성이 있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특성

3-nitrobenzenesulphonate, Na-Salt

CAS번호: 127-68-4

기존화학물질 목록번호: KE-25973

구체적 성분은 영업비밀임

4. 응급조치 요령

일반적인 조치사항:

즉시 오염된 옷을 벗을 것.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흡입했을 때:

환자를 안정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의료 조치를 취할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낼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눈꺼풀을 열고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영향을 입은 눈을 씻고 안과전문의에게 처치를 받을 것

먹었을 때:

즉시 입을 닦고 200~300ml의 물을 마신 후, 의료 조치를 취할 것.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증상: 자료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유해성: 자료없음

처치: 증상에 따른 처치(세정, 기능 회복)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건조 파우더, 포말

부적절한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사(water jet)

기타 유해 영향: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질/제품을 뒤섞지 말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유해 증기, 질소산화물

연기/안개 방출 위에 언급된 물질/물질군이 화재 시 방출됨.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급식 호흡 보호장비 착용할 것.

추가정보:

위험 정도는 연소되는 물질과 화재 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된 소방수를 처리하도록 할 것.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분진 형성을 피할 것. 개인 보호의를 착용할 것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오염수/소방수 함유 배수구/지표수/지하수에 방류하지 말 것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시: 적절한 도구로 담아 폐기할 것.

대량 누출 시: 분진 결합제에 담아 폐기할 것

먼지발생을 피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취급

국소배기장치 없이 대량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흡 보호를 할 것. 분진 형성을 피할 것.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보호조치:

분진 형성을 피할 것.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할 것.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보관

저장 조건에 대한 추가정보: 용기를 밀봉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노출기준 (작업장 관리기준의 구성 요소):

해당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사업주는 가스, 증기, 미스트,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저농도 혹은 단기적 영향에 적합한 호흡 보호: 고체 및 액체 입자용 중간효율 입자필터 (예; EN 143 또는 149, 타입 P2 또는 FFP2)

손 보호:

내화학용 보호장갑

장기적 직접적 접촉에 적합한 물질(추천: 보호 인덱스 6, EN 374에 따른 침투시간 480분 이상)에 질소고무(0.4mm), 클로로프렌 고무(0.5mm), 염화폴리비닐(0.7mm) 외 기타

보충설명: 사양은 시험, 문헌 및 장갑제조업자의 정보에 기초한 것이거나 비슷한 물질로 부터 유추한 것임. 온도와 같은 여러 조건 때문에, 실제로 화학보호장갑의 실질적인 수명은 테스트에서 결정된 투과시간보다 더 짧을 것으로 여겨짐.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조업자의 용도 지시사항에 따라야 함.

눈 보호:

측면 가리개가 있는 보안경 (프레임 고글)(EN 166)

신체 보호:

작업유형과 노출 가능성에 따라 에이프런, 안전화, 화학보호복 등의 신체 보호장비를 선택할 것(필경우: EN 14605, 분진: EN ISO13982에 따라)

일반적인 보호 및 위생상 주의사항:

산업위생 및 안전규정에 따라 취급할 것. 명시된 개인 보호장비 이외에도 밀폐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granule 형태
 색: 누르스름한 색
 냄새: 제품 특유의 냄새
 냄새 역치: 자료없음

pH 값: 6.5 - 9.5
 (100 g/l, 23 ° C)

녹는점(분해): 약 350 ° C
 물질/생성물 분해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인화점:

자료없음

인화성 (고체/가스): 적용불가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자료없음

자연발화 온도:

380 ° C

(DIN 51794)

분해 온도:

이 제품은 자발적인 점진적 열분해의
가능성 있음. 분해가 제품 전체에
퍼질 수 있음.

폭발위험성:

비폭발성

증기압:

자료없음

밀도(비중):

자료없음

벌크밀도:

약 730 kg/m³

증기밀도:

자료없음

수용해도:

약 200 g/l
(20 ° C)

용해도(정량적) 용매:

극성 용제
용해성

n-옥탄올/물 분배계수(log Pow) : -2.61

점도, 유동적:

자료없음

몰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7번 항목의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할 것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피해야 할 물질:

환원제

금속에 대한 부식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없음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지정된 대로 저장 및 취급한 경우 유해 분해물이 발생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급성독성

급성경구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포함):

LD50 쥐 (경구): > 5,000 mg/kg (BASF 테스트)

급성경구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포함):

LC50 쥐 (흡입): > 5.1 mg/l 4 h (OECD Guideline 403)

자극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 비자극성 (Draize test)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 자극성 (Draize test)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과민성 평가:

피부접촉 후 과민성 가능.

기니 픽 maximization 시험:

동물 시험 결과 과민성 영향

반복 투여 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 반복 노출 포함)

자료없음

흡인 유해성: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자료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변이원성 평가:

본 물질은 박테리아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음. 본 물질은 포유류 세포 배양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음

발암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인체에 대한 자료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노출):

참조: 반복투여독성

독성의 수치적 척도 (급성독성 추정치 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 평가:

본 제품은 수중생명체에 대하여 심각한 유해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적절한 낮은 농도로 생물학적 처리공장으로 유입되면 활성슬러지의 분해활동 억제는 나타나지 않음.

어독성:

LC50 (96 h) > 100 mg/l, Leuciscus idus

수생무척추동물:

EC50 (48 h) > 100 mg/l

수생식물:

EC50 (72 h) > 100 mg/l

미생물/활성슬러지 영향: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 1,000 mg/l (DEV-L2)

저농도로 적절히 투입할 경우 활성슬러지의 분해활동 억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음.

토양 이동성

환경 구분간의 수송평가:

자료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생분해성 및 제거율 평가 (H2O) :

쉽게 생분해되지 않음(OECD 기준에 따라) 거의 생분해되지 않음 물에서 쉽게 제거됨

제거정보:

0 - 10 % ThOD의 BOD (14 일간) () (호기성, 활성슬러지) 쉽게 생분해되지 않음(OECD 기준에 따라)
문헌 자료

90 - 100 % COD 환원 (5 일간) (OECD Guideline 302 B) (호기성, 활성슬러지) 물에서 쉽게 제거됨

총계 파라미터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820 mg/g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150 mg/g

생물 농축성

생물 농축성:

n-옥타놀/물 분배계수(log Pow)로 인해 생물체 농축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음.

기타 유해 영향

다른 환경독성정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수계에 방류하지 말 것

1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매입 또는 소각처리 할 것.

오염된 용기:

오염되지 않은 포장용기는 재사용이 가능함.

세척되지 않은 팩은 내용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국내 운송규정:

운송 법규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해상운송

IMDG

운송 법규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Sea transport

IMDG

Not classified as a dangerous good under transport regulations

항공운송

IATA/ICAO

운송 법규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Air transport

IATA/ICAO

Not classified as a dangerous good under transport regulations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국내 법규/규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자료작성 및 비치 등에 적용 대상 화학물질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비위험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해당 법규의 준수는 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상의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7.07.2010

버전: 4.0

제품: Golpanol® MBS Granules N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168993/SDS_GEN_KR/K0)

인쇄일 08.07.2010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기존화학물질목록:

ECL, KR

배포 / 등록

16. 기타 참고사항

용도에 관한 정보 본 제품은 공업용 제품의 특성을 가지며 달리 명시되거나 동의한 바가 없는 한 공업용으로만 이용할 것.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와 상의하도록 할 것. 위에서 언급하고 추천한 용도가 포함됨. 특히 이것은 특별 기준이나 규정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응용과 관련이 있음.

왼쪽 여백에 수직선은 기존 버전의 개정을 나타냄

이 안전정보에 포함된 데이터는 당사의 최신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것 이며, 제품의 특성 (제품 규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 또한 합의된 특성이나 이 안전정보에 포함된 데이터로 부터 추론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합성도 아님. 이 제품의 사용자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 등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현행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